

## 한국의 폭로저널리즘 현황과 문제점

원 우 현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1. 서론

언론이 주변에 일어난 사실을 파헤치어 객관적 실체를 드러나 보이게 한다는 사명은 저널리즘의 기본이 되고 있다. 다만 어떤 객관적 사실을 어떤 이유에서 어느 정도 파헤치어 사회적인 공동선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폭로저널리즘도 ①사회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사회고발저널리즘의 성격을 띄우기도 하고 ②「독자의 감정을 흥분시켜 주는 내용이나 그 내용을 실은 뉴스보도 방식」을 지칭하고 아니면 「사회적 범죄·재앙·성 추문·기이한 사건을 위주로 상세히 보도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정의되었다. 미국의 저널리즘 역사로 비추어 살펴보면, 조사를 기초로 보도하는 고발저널리즘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인 20세기 초엽 10년간은 폭로저널리즘(Muckraking Journalism)의 시대였다. 여기에 쓰인 Muckraking Journalism을 폭로저널리즘이라고 번역했다. 그 당시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언론이 사회의 치부를 고발하는 기능은 오물(muck)을 긁어내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여 이름을 붙였으며 이와 같이 사회의 치부를 들추어 내는 기자유형을 「Muckrakers」라고 했다. 이와 같은 취재보도 경향은 오늘날의 신문이 어떤 사실을 조사 분석해서 실체를 파헤치고 심층 분석하는 보도형식의 시초였고 그 당시 신문이 폭로저널리즘의 성향을 보이면서 그 당시 권력의 부패, 대기업의 횡포,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를 파헤치는 보도성향을 보였다.1) 폭로저널리즘의 두 번째 특징인 선정주의적 특징을 보면 1830년 대중에 영합하는 싸구려 신문이 이른바 「Sensationalism」을 조성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말로는 인기주의, 선정주의, 쾌락주의, 육감주의, 관능주의, 감각주의 등으로 번역되는 폭로저널리즘의 한가지양태로 등장한다. 미국의 초기신문이 1690~1700년대 경 사건을 간결하게 게시하는 형식으로 보도하였는데 1800년대 접어들면서 대중사회의 증상이 나타났었고 이에 부응하여 대중 신문이 등장하면서 보다 많은 독자를 얻기 위해 독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센세이셔널리즘으로 지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여기서 폭로저널리즘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고, 신문이 인간의 본능에 호소하여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보도형식에 치우치게 되었고, 따라서 폭력, 성범죄

등 사회적 윤리기준에 벗어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신문이 잘 읽히도록 하였다.2) 폭로저널리즘의 역사적이고 이론적 배경에 관한 언급은 다른 논문(차배근 교수)에서 상술할 것이므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고, 다만 한국의 폭로저널리즘의 현주소를 살피는데 간략한 스케치로 그친다.

## II. 한국의 폭로저널리즘의 일반적 특성

우리 나라 폭로저널리즘을 편의상 우선 80년 후의 언론계의 제도적이고 규범적인 대변혁 이후를 위주로 살피고, 그전의 경향은 주어진 사례로 부분적인 언급만 하겠다. 위에서 정의한 폭로저널리즘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80년 후에 언론에 부과된 사회적인 사명으로서 사회정의 실현과 공익성의 구현은 언론이 사회개혁 캠페인의 기수로서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큰 기여를 할 소지가 지대했다. 그러나 어떤 사회적 쟁점이든지 구별 없이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는 사회 고발적 기능이 언론에 허용된 것은 아니고 국가법익과 보도의 자유라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강조되어 폭로저널리즘의 대상영역이 일부로 국한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적 치부에 대한 정치, 사회, 문화적인 심층보도 기능이 약화되는 쟁점일수록 음성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나타나게 되어 유언비어나 지하언론의 호재로 되고 마는 기현상도 보였다. 그래서 한국의 폭로저널리즘은 첫째로 여론형성 과정에서 언론이 사회적 이슈를 파헤치기 위하여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심층분석하기 보다는 이미 정해진 사회적 쟁점을 국가나 정부의 입장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 보완적이고 대처적 기능의 일환으로 사건의 치부를 파헤치고 보도하는 경향이 높다. 주어진 여건 하에 제도적으로나 규범적으로는 물론 이미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회적 중요성의 우선 순위가 정해진 가운데 언론은 사회적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심층보도나 지상캠페인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둘째로는 한국의 폭로저널리즘은 사회정의나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역동적 기능을 해내기 보다는 사회운영 지침과 조화가 가능한 구조 기능적인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적인 전달과정의 일환으로 폭로저널리즘이 부각된다. 셋째, 신문과 방송의 파행적 공익성의 실천에서 오는 독자로부터의 괴리현상을 보상 받고, 언론기업의 영리적 이윤추구를 도모할 목적으로 선정주의적인 흥미위주의 폭로저널리즘이 나타난다. 넷째, 한국의 폭로저널리즘은 한국언론이 「모두 꼭 같다」, 「획일적이다」라는 객관적 현상을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원인을 사회구조적으로 규명하거나 저항하는 보도기능의 일환으로 나타난다. 모두가 「무개성」의 지면을 동일하게 확보해 나가는 여건 하에서 일회적이고 간헐적으로 지면에 개성을 살린 편집의도로 폭로저널리즘이 표출될 수도 있다. 다섯째는 변혁기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자체가 너무나 센세이셔널하고 기이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한된 지면에 보도는 단순한 보도 그 자체가 선정적인 성향을 띠 수밖에 없다. 여섯째는 한국 독자나 시청자의 생활패턴이 대중사회의 대중여가의 선용으로 변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보다는 신변잡기 등의 가벼운 보도에 눈이 쏠리는 성향이 나타난다. 일곱째는 방송매체의 경우 방송의 공익성과 상업광고를 통한 이윤추구를 동시에 병행해서 수행하는 데서 오는 역기능으로 폭로저널리즘의 미명하에 특수한 계층에 치우친 심층보도를 하거나 시청자의 감각적 취향에 영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덟째는 독자의 호기심이나 환심을 사서 판매부수를 늘릴 목적으로 성에 관한 인간의 욕구를 이용하여 여기에서 매스미디어라는 현대문명의 이기를 접합하여 성을 양산하는 「성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졌다.3)

섹스의 소재를 취급하는 것도 그 방식에 따라 진지하게 승화시키느냐, 흥미롭게 선정하느냐, 또는 저속하게 의식하느냐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여론 매체들은 서구의 그것들과 비교해볼 때 비교적 저속하고 퇴폐적으로 윤색하는 정도는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또다시 주간지나 월간지를 막론하고 잡지의 대부분이 성에 관한 기사를 특집으로 꾸미는 경우가 빈번해졌으며, 그것도 점차 흥미위주의 설정적 기사에서 개인의 명예에 관련된 사생활의 치부까지 들추어 냄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는 인간의 본능과 잠재의식 내지 현대사회의 구조적,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상업성에서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단지 미디어의 성산업화에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정적 섹스 기사를 감성적으로 추구하는 본능적 탐욕성에서 수용자의 태도가 변모해가야 할 문제점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 III. 폭로저널리즘의 연구현황

1960년부터 1985년 10월말 현재까지 신문이나 주간지를 막론하고 학자나 지식인들이 문제를 갖고 선정주의에 대해 취급한 논문을 조사한 결과(박허식 박사논문 1986년 참조) 모두 23편이었고, 그 내용을 박허식 교수가 분석한 결과 년대 별로 편수는 60년대 3편, 70년대 11편, 80년대 9편이고, 그 중 신문에 관한 에세이가 14편, 논문이 4편, 단행본이 1종이며, 주간지에 관해서는 에세이 3편, 논문 1편이라고 밝혔다. 한국 선정주의에 관한 23편의 논문을 특성 별로 보면 첫째,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적인 시각이 상업주의에 관한 것이었고, 둘째, 문제제기가 선정주의의 윤리적, 당위론적 규범성에 편중되어 있고, 셋째, 한국신문의 선정주의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어떠한 특수성이 있나를 살피기 보다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마는 경향이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정주의를 논하는 특징을 살펴보면 「도덕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수용자의 입장에서 살피기 보다는 「도덕성」만을 규범론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높아서 일반성에 대한 논의에 그치는 점이 특색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의 폭로저널리즘의 결과로 나타난 선정주의를 전문가들이 너무나 일률적으로 도덕성의 문제로만 취급하여 선정주의에 내포된 우리 현실의 실제문제를 다각도로 제기하는 데 등한한 편이다.

#### IV. 한국 신문방송매체의 폭로주의 특성

우리 나라에도 1968년 하반기부터 주간지가 쏟아져 나오면서 자연히 독자의 감성과 신변잡기를 위주로 한 선정적 보도경향이 나타났다. 그 당시 대중매체가 지금과 같이 전문지시대에 이르지도 못하고, 수량도 적은 형편에 정부의 언론통제로 주간지를 비롯한 언론이 상업적 이윤추구로 최대다수의 독자확보를 목표로 삼기 시작했다. 그 후 1970년대 접어들면서 방송매체의수상기 보급이 급증하였다. 1970년대는 지금과 같은 공영화 이전이라 상업주의의 경영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방송의 기능 중 오락기능을 강화하여 오락프로그램에 치중하며 부분적으로 센세이셔널리즘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1970년대 후반기부터 1980년대까지 일간신문도 그 비판기능이 둔화되고 사회면의 살인, 강도 등 범죄기사나 섹스와 치정관계 등의 기사를 전보다 많이 취급하여 선정성을 농후하게 드러내 보였다.

(1) 우리나라 신문은 전술한 대로 대체적으로 「무성격」을 특징으로 삼다가 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의 사회적 가치평가나 객관적 실체보다는 독자의 본능적 흥미에 호소하려는 선정적 기호를 가미시키기도 한다. 어떤 신문이든 큰 사건이 발생해서 돌연히 선정지로 변신하는 주기적 변화 속에서 한국 신문이 보호해야 할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신문의 선정주의적 성향은 사회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사건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중에도 살인, 강도 같은 범죄 및 폭행, 사고, 치정관계 등을 주로 다루게 되니까 그 보도활동 자체가 선정적일 수 밖에 없는 한국적 특성이 있다. 한국 신문이 주변의 사건을 사회적 공익성에 상관없이 지나치게 추적하고 파헤치는 경향은 언론이 독자에게 줄 수 있는 오락적 기능을 통해서 일반사회분위기가 정치적 쟁점으로 경직된 상황을 상쇄하려고 일반국민의 긴장과 피로감을 덜어주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불만을 해소시키는 효과도 나타낸다. 일반국민이 현실적으로 당면한 사회적인 쟁점을 생각하고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발탁하여 현실문제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돌리게 한다. 또한 독자들간에 공통적인 화제를 제공해주는 「조직폭력배」 사건과 같은 화제의 사건이 장안의 화제가 되어 인구에 회자하여 국민들 사이에 화제거리가 되어 독자들의 무가치한 호기심과 냉소적인 낭만을 습관화되게 만든다. 이는 언론의 사회적 비판기능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공익성을 건전한 여론조성과 형성과정을 통하여 진작시키기보다는 지식산업으로서 상업성을 지향한다는 비난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건기사는 기능적으로 보도기사성격을 띠면서 내용은 사회적 쟁점인데 결국 독자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발행부수를 늘리어 신문대금이나 광고료를 더 받고 언론기업의 이윤을 증대하자는 데 있다. 언론기업의 폭로하는 식의 저널리즘은 언론기업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독자 일반이 선정적이고 폭로하는 식의 사건 기사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선호하는 데 그 원인도 있다. 독자의 입장에서 사건기사가 그 문제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요 없고, 수용과정에서도 노력이 필요 없고, 개인심리 면에서 자기방어본능을 충족함은 물론 심리적 보상을 얻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보도내용보다 선호한다. 그밖에 한국신문에서 한 주제를 설정하여 사회운동으로 전제하는 캠페인기사는 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사회적 이해관계가 있는 각계 각 층을 그대로 반영하여 사회에 공익성을 높이는 기여가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가치판단의 중심부에 속하는 정치, 경제문제가 제한된 지면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부작용을 거론하는 여론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신문이 우리사회가 존중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그 사명을 다해야 한다. 신문의 사명이 일반독자가 「알」 권리를 갖고 있어서 독자의 알 권리를,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입장에서 무엇이든 상세하게 보도해야 한다. 그러나 신문이 독자들에게 올바르게 건전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가치관념이나 사상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사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신문의 폭로저널리즘 경향도 일반 독자가 「알아야만 할」 사항과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구별하여 「알아야만 할」 사건은 일반여론을 겸허하게 경청하여 그 중요성에 따라서 조사하고 심층취재 보도해야 할 것이다.

(2)방송매체의 경우도 1970년대 접어들어선 텔레비전 수상기의 보급이 급증하여 현재는 칼라 텔레비전이 1가구 2세트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방송언론의 폭로위주의 심층보도는 1980년 이전에 손쉽게 확산될 수 있었다. 1970년대 방송경영제도나 조직구조가 상업주의를 목표로 개인기업이 운영했기 때문에, 광고유치를 위한 시청률 제고에 관심을 보였고 오락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분적으로 센세이셔널리즘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 후반기에는 공영화를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사회계몽적 역할을 기대하는 심층보도 프로그램으로 보도기획물이 사회문제, 올림픽게임, 문화행사, 자연경관, 이국문화 탐방 등으로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프로에 속하는 사회고발프로나, 심층보도프로그램을 196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끊이지 않고 카메라의 앵글을 현장에 비추어 시청자에게 보도와 비판기능을 해내고 있다. 텔레비전의 경우 1964년 TBC 「카메라의 눈」이 보도기획물로 매주 1회 15분간 방영됐고, 그 후 1965년 KBS 「카메라 초점」, 1967년 TBC 「TBC 박서」가 6편만 방영된 후 중단되었고, 같은 해에 MBC 「MBC 리포트」가 우리사회의 문제점을 매주 30분간 보도했었다. 1980년에는 KBS 「다큐멘터리 80」이 국제분야와 사회·경제 문제를 위주로 취급하였고, 1980년 9월엔 KBS 「뉴스 파노라마」, 1980년 MBC 「뉴스센터」, 1981년 KBS 「월요기획」, 1981년 MBC 「레이더 11」, 1981년 KBS 「시민법정」, KBS 「스튜디오 830」, 1983년 「추적 60분」이 사회고발프로그램으로 우리사회의 환경을 감시하고, 시청자의 관심을 환기시키어, 관계기관에 개선을 촉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최창섭 교수가 지적한 대로 카메라

앵글로 비친 심층보도는 첫째로 내용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취해져야 할 형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어느 한쪽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문제를 보도하는 성향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둘째는 문제의 핵심이 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현상과 결과에 대한 피상적인 취재보도로 그치는 면이 취약성으로 지적된다. 셋째는 보도대상이 갖는 사회적 가치나 중요성에 비하면 주변적인 내용을 취하면서도 지나친 센세이셔널리즘으로 과장하고 확대하거나 재방을 일삼는 경우도 있다. 넷째는 보도처리의 기술로 개인의 익명성이나 사생활을 존중하는 면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개인법익보다는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인권침해가 생긴다. 심층보도 과정에서 인권권침해라고 지적된 사례는 KBS 1TV의 「뉴스 파노라마」에서 방영된 「비틀거리는 양심 ? 마취 된 사회」, 「을지병원 남편 독살사건」의 범인과 일문일답 과정을 「생방송」한 것과 MBC TV 「레이더 11」에서 방영한 「피서지의 두 얼굴」이 그 예에 속한다. 다섯째는 사건 자체를 전체적 상황에서 조명하여 외형적 사실을 보도하는 데서 한걸음 나아가 정확한 객관적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심층보도가 제구실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방송은 폭로저널리즘이 정치방송의 경우에는 균형과 형평을 잃고 한가지 시각에서 고발하고 폭로하는 편향적 보도성향을 면치 못하고, 교양 오락프로도 지나친 시간배정이나 과장된 표현으로 심층보도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해내지 못한다. 방송이 매체기능 때문에 신문매체보다 선정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고 방송운영에 관료적 행정력에 영향을 받을 방송운영체계상의 취약점 때문에 폭로저널리즘으로서 사회고발프로그램이 그 역기능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 방송광고 자체에도 과장된 내용이나 번잡한 화면이 나타나지만 광고 스폰서가 따르는 인기드라마, 연속극 등에도 선정적 장면, 치정관계, 불륜관계, 비정상적인 도덕관, 무희들의 관능적 춤, 자극적 조명 등이 적지 않게 시청자를 선정적 분위기로 몰고 간다.

## V. 한국의 사건보도 사례분석을 통해 본 폭로저널리즘의 실태

(1)언론에 있어서 범죄사건의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매스미디어의 권리이며 책임이다. 사건의 보도는 독자나 시청자의 관심분야이며 또 사회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사비비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의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 제 30 조 1 항은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범죄사건 보도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범죄사건보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익의 형평을 고려하여 언론에 의한 개인의 법익침해에 대한 보호장치를 법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현행 헌법 제 20 조 2 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인격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자칫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켜 언론이 수행하는 사건보도기능의 긍정적인 면을 침식하기 때문에 이 양쪽권익의 형평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이 폭로저널리즘성향으로 사건을 보도한다면 그 기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으로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현대는 주로 신문, 방송을 통해 사회현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은 사회교육의 장이 된다는 점이다. 윤노파 사건, 박양 사건의 보도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언론의 이 사건보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권과 관련하여 표본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 결과를 초래한 바 예컨대 형사재판은 「증거」 재판이라는 점과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력이 없으며, 검사 앞에서의 임의의 진술이어야 한다는 점, 영장 없는 구금은 불법이라는 점과 같은 내용을 심층보도로 사회에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행정기관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신장되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나 가정에서의 권리의식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우리 처지에서 시민들의 권리의식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야누스의 얼굴과도 같이 언론의 사건보도기능은 같은 사건보도라도 부정적인 측면으로 살필 수 있다. 지나친 과대보도와 추측보도, 선정적 보도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그 실례에 속한다.

「여대생 살해 사건」에서의 경우 언론에서는 때를 만났다는 듯이 무책임한 보도를 남발하여 엉뚱한 사람들이 피의자로 몰려 명예훼손과 불법감금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또 박 양의 수첩에 몇 십 명의 남자 이름들이 적혀있었는데 그 중에는 기혼자도 있고 사장도 있었다고 보도하여 이미 고인이 된 한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였다. 이 때문에 박양은 생전에 그를 알았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지울 수 없게 됐으며 유족들에게도 딸을 잃은 슬픔에 덧붙여 수모와 창피감을 안겨주었다. 이런 경우는 윤노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고여인(나중에 무죄판결)을 범인으로 보도하였고, 범죄사실과는 관계없이 죽은 사람에 대한 사생활을 낱낱이 공개하였다.

78년 D대 김모 교수 실종사건의 경우에서도 이 사건이 단순한 자살 사건인데 언론에서는 과잉선정보도를 하여 문란했던 애정관계만 중점 취재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독자들의 억측만 가중시켰다. 더욱 불행한 것은 이런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때문에 김 교수의 딸이 약혼자로부터 파혼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도 복잡하고 다원화 되어가기 때문에 독자들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 매스미디어의 사건보도기능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담당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그런데 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매스미디어는 수가 줄고 기구는 거대화되어서 그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매스미디어의 보도기관의 우월적 지위가 개인법익과 상관해서만 따져보면 상대적인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2)언론중재의 실적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언론의 침해유형은 다음 <표 1>과 같이 명예훼손과 신용권에 관련된 것이 97%에 이르고 있어 언론침해의 부분이 주로 명예훼손과 신용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 신청내용에 따르면 <표 2>와 같이 213건의 언론침해 중에서 오보와 허위보도가 51.2%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방보도와 왜곡보도 및 과장보도가 39.9%를 차지하고 있어 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 것과 사실을 잘못 다루어 문제를 유발시킨 것이 213건 중 194건(91.1%)에 이르고 있어 언론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새삼 강조하게 된다.

<표 1> 침해유형

연도	명예 및 사생활	신 용 권(재 산)	저 작 권	계
81	23 (52%)	15 (34%)	6 (14%)	44 (100%)
82	41 (82%)	9 (18%)		50 (100%)
83	58 (82%)	13 (18%)		71 (100%)
84	39 (72%)	12 (22%)	3 (6%)	54 (100%)
85	44 (74%)	15 (26%)		57 (100%)
계	205 (74%)	64 (23%)	9 (3%)	278 (100%)

<표 2> 81년~84년

내 용	신청 건수 (비 율)
오 보	57 (26.8 %)
허 위 보 도	52 (24.4 %)
편파적 일방보도	40 (18.8 %)
왜 곡 보 도	31 (14.5 %)
과 장 보 도	14 (6.6 %)
비방적 중상보도	8 (3.8 %)
저작출처의 불명	6 (2.8 %)
조작적 보도	3 (1.4 %)
약속 불이행	2 (0.9 %)
계	213 (100 %)

이와 같은 보도의 부정확과 왜곡현상은 주로 일간신문과 방송, 주간지 등에서 주로 나타내고 있는데, 즉 <표 3>에서 보듯이 일간신문에 의한 것이 전체의 61%로 압도적으로 많고, 방송이 11%, 주간지가 9%, 주간신문이 7% 순으로 일간신문과 방송, 주간지에 의한 피해가 전체 278 건 중에서 224 건(8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그 중 특히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에 관련된 침해는 인간의 알 권리 이전에 인간에게 부여된 인간본연의 성역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의미에서 사생활 권이라는 것은 첫째, 사생활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이며, 둘째,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전을 방해 받지 아니할 권리이며, 그리고 셋째는 자기와 자기의 책임하에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sup>4)</sup> 따라서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천부적인 인간의 권리를 경원시하고, 상업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는 오늘날 언론사의 현실에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86년 4월 6일자 「주간경향」의 『이혼진기록-한집안 4 남매가 줄줄이 파경』이라는 제하의 보도내용은 제보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제보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마치 재산을 노려서 위장 결혼하여 이혼하는 별난 집안처럼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사례 2) 86년 6월 15일자 「선데이 서울」에 게재된 『성인행세 한 도사는 섹스도사』라는 제하의 기사는 마치 취재한 여기자가 경찰과 함께 사실취재를 보도한 것 같이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아직 경찰에 고소된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이야기를 제보 받아 사실인양 보도하여 당사자에게 정신적 피해 및 사회적 명예훼손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사례 3) 86년 10월 5일자 「주간경향」에 게재된 『동거시비 금보라 행복이나? 화해나?』라는 제하의 기사내용에는 금보라가 동거설에 대해 증언한 녹음테이프가 잡지사에 있어 동거설 확산방지를 위해 화해를 요청하였으며, 잡지사에서는 공개사과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보도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정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표 3> 신청인 유형

연 도	개 인	일반단체	회 사	학 교	종교단체	종 친 회	공공기관 단체	계
81	25 (57%)	11 (25%)		1 (2%)			7 (16%)	44 (100%)
82	32 (64%)	6 (12%)	8(16%)	1 (2%)	2 (4%)		1 (2%)	50(100%)
83	42 (60%)	10 (14%)	9 (13%)	1 (1%)	7 (10%)	1 (1%)	1 (1%)	71(100%)
84	36 (67%)	3 (5%)	5 (9%)	1 (2%)	7 (13%)		2 (4%)	54 (100%)
85	33 (56%)	9 (15%)	13 (22%)	3 (5%)	1 (2%)			59 (100%)
계	168 (60%)	39 (14%)	35 (12%)	7 (3%)	17 (6%)	1 (1%)	11 (4%)	278 (100%)

<표 4> 매체유형

연 도	일 간 신 문	통신	방송	주간신문	월간신문	주간지	월간지	계
81	34	4	2	2		2		44
82	19	2	13	3		9	4	50
83	47	5	4	6	1	6	2	71
84	27	1	10	5		5	6	54
85	41	6	1	5	1	4	1	59
계	168 (61%)	18 (6%)	30 (11%)	21 (7%)	2 (1%)	26 (9%)	13 (5%)	278 (100%)

(사례 4) 86년 7월 8일자 「레이디 경향」에 게재된 『완전 대 특종 미스코리아 진 김지은 과거고백』이라는 제하의 기사내용은 미스코리아 진 김지은이 미스코리아 경연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강남구 서초동 소재 룬 살롱의 호스티스였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그러나 그 기사는 마치 김지은이 호스티스로 종사하였던 것처럼 유언비어를 추적, 조작하고 피해자(김지은)와 인터뷰기사 내용도 사실과 다르게 윤색하여 피해자가 그 사실을 시인한 것처럼 보도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의 해명수기를 게재하였다.

(사례 5) 86년 10월 호 「주부생활」에 게재된 『황신혜의 숨겨진 사랑 전 고백』이라는 기사내용은 탤런트 황신혜가 최근 그녀를 둘러싸고 50대 탤런트 선배인 오모 씨와의 염문설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그 스캔들의 진상을 최초로 밝힌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보도는 오모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부생활」이 피해자(오모 씨)와의 합의에 따라 정정 보도문을 게재 하기로 하였다.

(사례 6) 86년 5월 1일자 「여원」에 게재된 『박근영 · 류청 이혼소문, 진상은 이렇다』라는 제하의 기사내용 역시 당사자의 면담이나 직접취재 없이 소문에 근거한

기사를 작성, 보도하여 양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사생활 침해유형은 대체로 일곱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①흥미분위로 공익과 무관한 사생활의 보도, ②뉴스 여파인물의 신원공개, ③공공성 없는 인물의 사생활 공개, ④흥미 화제로 연예인의 사생활 폭로, ⑤부당한 개인의 사생활 공개, ⑥수치스런 개인의 사생활 공개, ⑦불명예스런 전과의 공개 등으로 유형화 될 수 있다.

#### IV.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 폭로저널리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유언론이라는 굳건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뉴스 초점의 다양화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도범위의 한계성 때문에 이에 대한 탈출구로서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언론의 보도경향이 단순한 정치적 변화와만 연결시켜 설명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국민의 가치규범이나 관심의 영역의 변화 등에 의해서 설명될 수도 있다. 예컨대 70년대 이후 급속한 전파미디어의 보급과 경제적 기반이 확립되면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이 야기되고 사회구조가 점차 복잡하게 분화되어 갔다.

이 때 근대적인 대중사회현상이 싹트게 되었고 모든 경제적 기반은 상업적 이윤추구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일종의 지식산업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의 경영정책도 상업적인 이윤획득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생산해내는 내용문들은 최대다수의 관심과 흥미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특성을 지닐 수 밖에 없었다.

그 후 정치적 변혁을 거쳐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전의 지나친 언론의 선정성을 방지하고 사회의 공기로서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강구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언론매체들을 통폐합하고, 특히 방송의 공영화를 부르짖으면서 사회일각에 만연되어 있는 부조리와 비리를 파헤치는 심층보도 프로그램들이 속속 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고발프로들은 사회의 도덕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사회의 주체인 국민다수의 개인적인 이익들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는 경향이 농후했다. 그 결과로 그러한 보도물의 제작과정에서 그리고 사건기사를 취급하는 방식에서 눈에 띄게 획일적인 보도경향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어떤 사건기사에 대해서 각 언론매체들은 그것에 대한 진실보도보다는 흥미위주의 사실보도만을 크게 다루어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를 추구하려는 독자나 시청자의 욕구를 후련하게 만족시켜 주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과열경쟁의 결과로 사건피해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킨다거나 명예를 더럽히는 등 적지 않은 물의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이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의 기현상은 언론매체의 보도보다는 오히려 대인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의해 획득된 정보의 내용에 더욱 신뢰도를 두게 되어, 진정한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지 못하고 사회적 통합의 장애요소인 유언비어가 횡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이 선정적이고 감상적인 보도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언론이 설 자리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문제 해결자로서의 언론의 존재가 무의미해질 때는 사회적인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 존재하고 있는 언론의 존재적 가치를 동시적인 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언론인의 안목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며, 아울러 정책집행자들도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국가의 주체인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극대화에 한층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팽원순, "사회고발 저널리즘의 역사적 고찰", 「방송연구」, 84년 봄, p. 139.

2) 안광적 "센세이셔널리즘의 생성과 변천", 「언론중재」, 1984년 봄, p. 17.

3) 남철기, "저널리즘과 성 표현", 「신문평론」, 1972.p. 68.

4) 권영성, "사생활의 의의와 역사적 변천", 「언론중재」, 83년 여름, p. 7.

□ 서울대학교 법학과, 미국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 (신문학박사)

□ 저술: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전파와 문화」 (공저), 「유언비어론」 (편저),

「설득커뮤니케이션」 (공역), 「여론원리」 (역서), 「여론 선전론」 외 다수

□ 현재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